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손해배상 대상”

– 광주지법 순천지원, “추가공사 미끼로 한 공사금액 부당감액  
및 하도계약 일방파기 위법행위 배상” 판결 –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체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 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이번 판결의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부당감액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도급자의 강요에 따라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이 제대로 반영되

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합의를 했다. 그 후 하도급자가 제출한 공사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했으나 원도급자는 수령하지 않고 하도급자가 추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요청하자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할 것을 강요했다.

원도급자의 강요에 따라 감액된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기존 공사대금 잔액과 추가 공사에 대한 중도금을 함께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각 정산합의 및 변경계약은 하도급자의 궁박상태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은 하도급법 제 11조제1항 위반이고, 따라서 원도급자는 부당감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원도급자는 동종의 공사를 수차에 걸쳐 추가 발주를 약속하면서 타 하도급업체도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1차 공사대금보다 오히려 감액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도급자는 추가공사 발주를 취소하면서 추가공사 발주를 전제로 체결한 하도급단가를 그대로 유지한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동종의 목적물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단가보다 현저하

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법원이 밝힌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1차 공사대금이 기준이 되고 후속공사에서 감액된 하도급대금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계약해지 및 계속공사 교섭 파기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또 추가공사에 대한 교섭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도급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한다” 또 “장래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중인 하도급계약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안내**

월간 설비건설 2008년 9월호에 게재된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용 중 50p,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인증 현황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했으나 누락된 회원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상호	대표자	인증현황	인증기관	지역
(주)하이콘	김용욱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주)크레비즈큐엠	대구